

# 서 면 답 변 서

소 속	평 창 군 의 회	질문위원	(김광성) 위원	
답 변 자	평 창 군 수 (경제과장)	일 자	질의	2022년 11월 30일
			답변	2022년 12월 1일
회 의	제281회 평창군의회 제(3)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			

## 질문요지
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 발전소별 순이익

## 답변내용

발전소별 당기순이익(2021년)

- 강원풍력 : 5,385,560,494원
- 대관령 제1풍력 : 강원도청에서 운영 중인 발전소로 부존재
- 태기산풍력 : 3,632,596,947원
- 평창풍력 : 1,537,401,122원
- 대기리풍력 : 884,988,843원
- 대기풍력 : 자료 부존재
- 백운태양광 : 자료 부존재
- 노동풍력 : 자료 부존재
- 청산풍력 : 6,311,718,775원
- ※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임
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산정기준

→ 지원사업비는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에서 교부됨

-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금 결정

가.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

- 계산식 : 전전년도 발전량(kWh) ×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(원/kWh)  
+ 설비용량(MW) × 발전원별 설비용량 단가(만원/MW)

\*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 : 신·재생에너지 0.1(원/kWh)

\*\* 설비용량 단가 : 신·재생에너지의 경우 없음

나.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 : 발전소 건설비(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)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액

- 청산풍력발전(주) 특별지원사업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배분총액	평창군	횡성군	비 고
특별지원	896,000	597,700	298,300	

※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2항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이면 그 지역에 대한 관할 면적비율, 인구비율, 발전소로부터의 거리,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산정(평창군 66.7% / 횡성군 33.3%)